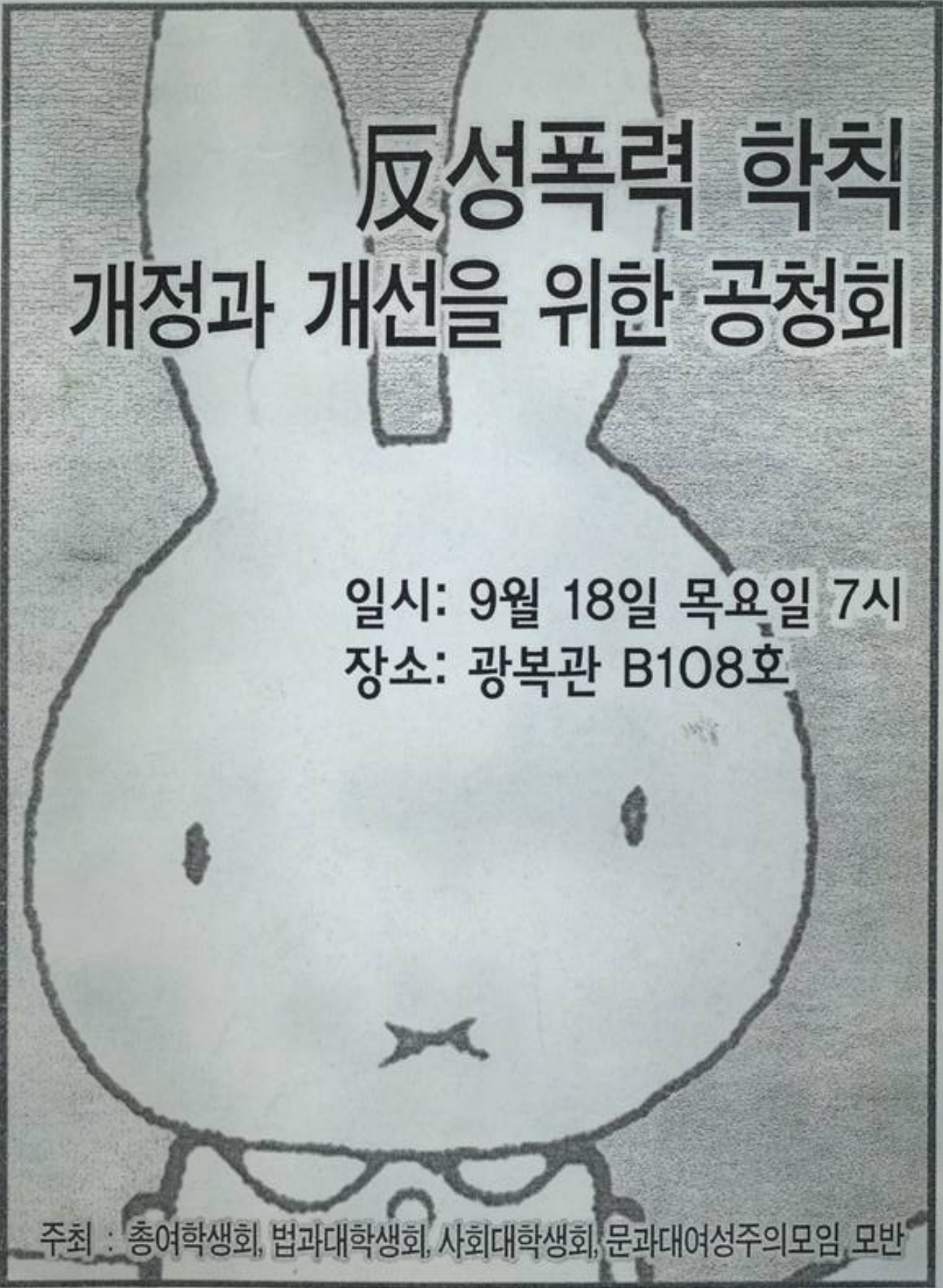




反성폭력 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일시: 9월 18일 목요일 7시
장소: 광복관 B108호

주최 : 총여학생회, 법과대학생회, 사회대학생회, 문과대여성주의모임, 모반

contents

- 2 反성폭력 학칙 개정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며
- 3 반성폭력학칙의 빈자리 채워 나가기
- 10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짚어보기
- 15 반성폭력 학칙 자세히 살펴보기
- 26 학칙으로 교수 성폭력 해결하기
- 30 반성폭력 학칙,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32 이학성 치성과의 인터뷰
- 34 반성폭력 학칙 개정지침

反성폭력 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

contents

- 2 反성폭력 학칙 개정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며
- 3 반성폭력학칙의 빈자리 채워 나가기
- 10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짚어보기
- 15 반성폭력 학칙 자세히 살펴보기
- 26 학칙으로 교수 성폭력 해결하기
- 30 반성폭력 학칙,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32 여학생 처장과의 인터뷰
- 34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개선 성명서

공청회 순서

- ▼ 반성폭력학칙의 빈자리 채워 나가기
 - 김김보연(한국성폭력상담소 성과인권팀)
- ▼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짚어보기, 반성폭력 학칙 자세히 살펴보기
 - 채하승연(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반성폭력위원회)
- ▼ 학칙으로 교수 성폭력 해결하기, 반성폭력 학칙,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김한선혜(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

>>> 반성폭력 학칙 개정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며

반성폭력 학칙 개정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 "우리 학교에 그런 학칙도 있었나?"하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이 200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최근까지 여러 건의 학내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꾸려져왔다는 사실까지 알면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다.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바로 주변에 있는 학우들도 반성폭력 학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더욱이 학내에서 꽤 여러 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 처리과정이 명확치 않다는 사실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자신이 성폭력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도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그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참거나 피해사실이 무마되는 경우도 많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도, 사건이 불분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입에는 회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불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이 반성폭력 학칙에 대해서, 다수의 성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따지고 들어가면 학칙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반성폭력 학칙은 교육부의 권고로 2000년에 제정되었다.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된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열린 토론과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정되어 개정해야 할 항목이 많다. 또 제정된 이후에도 연세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홍보와 공론화가 미비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학칙에 따라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오히려 학칙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가 하면,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풍부하지 못해 삼가야 할 언행을 하는 실수도 많았다고 한다. 대책위원회부터가 학칙에 따라 철저히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리된 성폭력 사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교수와 학우들이 학내 성폭력 사건이나 반성폭력 학칙에 의한 사건 해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이미 제정되어 있는 학칙 중에도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많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금 시점에서 반성폭력 학칙 개정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을 매개로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반성폭력 학칙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칙 개정과 대책위원회의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하여 본래의 역할을 다해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세 구성원간의 폭넓은 토론과 공론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성폭력 학칙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이번 공청회가 학내 구성원들이 반성폭력 학칙에 대해 더 알게 되고, 현재 학칙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정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3년 9월 18일

총여학생회, 법과대학생회, 사회대학생회, 문과대여성주의모임 '모반'

반성폭력학칙의 빈자리 채워 나가기

by 김김보연(한국성폭력상담소 성파인권팀)

90년대 중반부터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내 반성폭력운동은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교육부에 의하면 약 4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이 학내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고 학내 성희롱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가져온 하나의 제도적 성과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성과이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 일련의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을 지원하면서 가진 경험들은, 학칙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이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칙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현재 학칙이 가지고 있는 빈자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 학칙의 빈자리들로 여러 가지 것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지원상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1)교수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학칙 신설의 필요성, 2) 가해자 징계권한 확보와 가중징계 조항 신설의 필요성, 3)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칙 개정의 필요성, 4) 피해자 권리구제의 다양한 창구 중 하나로서의 학칙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수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학칙 신설 필요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 중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은 크게 네 가지 장애에 부딪힌다. 첫째, 피해자가 교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학점과 진학,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 둘째, 어렵게 피해사실에 대해 밝힌다해도, 동료들간에 지지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동료들 역시 교수와의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 때문에 선뜻 나서서 사건을 지원하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교수성폭력 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사건 발생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교수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교수와 신뢰관계가 높을수록 더욱 교수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행동을 한 교수는 "거부하지 않았다" 혹은 "몰랐다"는 말로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넷째, 가해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교수에 대한 처벌이 일회적이거나 미약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보통 처벌은 감봉, 3개월 정직 등 가벼운 조치가 취해지며, 간혹 사퇴를 한다해도 성폭력 가해 때문이 아니라 일신상의 사유로 처리되어 다른 학교에서 임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피해학우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문제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동료교수들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일련의 직간접적인 회유 및 압력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학위를 포기하게 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판단범위, 가해 교수의 처벌 문제와 피해학우의 보호 문제에 대해 현재 학칙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 판단기준: "거부나 동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관계"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교수의 처벌이 경미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성폭력 피해의 판단기준이 가해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수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 때문에 거부의를 강력하게 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후 겪을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거부유무" 혹은 "동의유무"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책임을 다시 묻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수/학생간 피해는 사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권위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이 요구되는 대학사회에서 피해학우들은 가해교수의 성적인 언동이나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이라는 일반의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학점, 졸업논문, 진로 등 사회적으로 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계와 신뢰관계'를 이용한 교수의 접근은 피해학우들로 하여금 사건당시에는 교수의 접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임을 인식하고 나서도 이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동의된 관계'라 간주되더라도, 애초에 동의자체가 불공평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자체가 무효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절대적 지위에 의해 접근할 때 피해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이를 믿고 따라가게 되기가 쉬워지고, 따라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학교와 종교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이다. 따라서 동의하의 관계들도 단지 교수의 도덕성과 품위 훼손의 차원이 아니라, 성폭력적 특성으로 파악되고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성적인 제안과 회통을 했을 때 그것을 성폭력일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가해자 처벌: 학교측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

두 번째,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지는 심각성과 그 영향이 대학내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들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대학 차원에서의 문제의식과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뒤에는 징계권을 가진 집단 역시 가해교수와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는 교수사회라는 점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교수 성폭력 사건 지원과정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조차 빈번하게 접하게되는 발언들 중 하나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간 교수로서의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들이다. 이는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과 피해학우가 침해당한 교육권 및 인권의 중요성을 대학사회가 얼마나 경미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내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갖는 특수성과 이로 인한 일련의 문제점 및 어려움에 비하여, 현 학칙에서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간의 폭력에 대한 정책이 그나마 조금 수립되어 있을 뿐, 교수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대학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 외국 대학 학칙은 좋은 참고가 되어준다고 생각된다. 외국 대학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성폭력 유형이 가지는 특수함과 문제점 그리고 각 유형별, 관계별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및 의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 사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가해 교수의 처벌과 그 과정에서의 피해학우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조문화시켜 놓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더불어 공인으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과의 표면적인 관계와 구체적인 피해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교수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현 대학내 반

성폭력 학칙에서 또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별도의 유형화된 처벌 규정을 세분화시켜 명시해 놓는다면, 교수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대학 사회 내에서의 공감대 확산과 가해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및 징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위에 의한 권력을 매개로 한 교수 성폭력은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때, 반성폭력 학칙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자리 학칙도 되지 못할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은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 근절의 모든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대학내의 위계나 권력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및 강화 필요

교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의 문제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문제이다.

현 학칙의 대부분에서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 피해자의 신변보장과 보호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신분 노출로 인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게 되거나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들에게 노출되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의 경우, 다른 대학내 성폭력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문제제기 및 권리구제 청구 행위를 교수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교수사회 분위기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학우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학칙에 반영하고, 상담원은 이 같은 권리현장을 피해자에게 공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인지시킬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학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실을 접수받거나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대책위원들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처리절차가 부당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혹은 위원 중 누군가에게 합의를 종용받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을 경우와 같은 2차 피해의 경우 이를 강제, 징계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2. 가해자 징계권한 확보와 가중징계

- 피신고자의 출석 강제권 행사의 필요성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 또 하나는 바로 피신고자 혹은 가해학우에 대한 강제권을 제한 당하는 경우들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서 피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어떠한 조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신고자가 이를 무시해버림으로써 사건해결의 어떠한 절차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무력화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피신고자의 답변 거부권 행사까지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학 측에서의 입장은 피신고자의 출석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측의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 학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하나의 규칙들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만일 성폭력 사건이 학내 상담실에 접수되고, 해당 학생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서 지명되게 된다면, 학교는 사건의 적합한 조사와 해결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학생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칙에 명문화된 이러한 요구에 해당 학생이 불응한다는 것은 대학 공동체 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대학으로서서는 가질 수 없는 권리침해라는 인식은, 그렇다면 현재 대학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대학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학칙과 운영 규칙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학에 의해 해당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징계권 행사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일례로 외국대학의 학칙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접수될 경우 이의 중재자는 긴급하게 가해자에게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절차정보를 알려주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공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피신고자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신고자의 출석 강제권 행사와 함께, 만일 학교측의 요구에 피신고자가 불응할 경우, 이를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과 별도로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 가중징계 조항 도입의 필요성

학교측의 출석 요구에 대한 피신고자의 불응과 유사하게,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일련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어떠한 조항도 현재 대부분의 학칙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징계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가중 징계 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가중징계 방법이 고려,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해자의 징계내용 위반이나 2차 가해에 대한 가중징계 조항의 도입은, 피해학우에 대한 보호와 또 다른 성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근절하고, 학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만 한다.

- 징계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 필요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방식들을 보면 많은 경우, 학사상의 징계(정학제적퇴학)와 같이 신분 유지와 관련된 제재방식, 봉사나 가해자 교육 이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사과나 배상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계 방식들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다양한 징계방안들에 대한 고민의 부족은, 다양한 피해유형과 상황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위와 같은 징계방식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징계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들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신고자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대부분 사건의 조사기간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피신고자는 졸업을 해버림으로써 어떠한 실질적인 징계도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와 같이, 졸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징계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3.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로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문제가 존재한다.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련의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개개 사건의 사후적인 처리뿐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 가능한 토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발생 자체를 예방근절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 및 정책이 대학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학내 성폭력 재생산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이나, 개별적인 사건의 처리에 중점을 둔다면, 대학내 성폭력의 예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70년대부터 대학내 성폭력이 이슈화되고 제도화된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내 신고센터가 갖추어져 있다 해도 피해학우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Cairns(1997)은 이러한 문제들이, 신고센터나 개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기술의 문제에서 성폭력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의 처리를 개인적 대응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일은 성폭력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 남겨 놓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은 특정개인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성폭력 사건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 여서는 안되며, 공동체 내부를 성찰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내 성폭력 역시 다른 성폭력처럼, 가해자의 이상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구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성별 권력의 문제에서 기인한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성적 비하,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표시로 해석하고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문제제기하지 않는 대학의 분위기는 대학내 성폭력이 발생하게 하는 근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에 있어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다.

특히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 및 강사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및 강화에 대한 요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질적 시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스럽다. 사건지원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볼 때, 교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분이며, 시행한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보내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교수들을 한자리에 모으기가 어렵다"거나,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토로는 사실상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거나 더불어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우선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스러움의 토로는, 교수사회의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발생 토대가 되는 우리사회의 여성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가치관은 전문분야에서의 학식과 교양 등이 얼마나 풍부한지와 무관하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대상에 교수, 학생의 구분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적으로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수 성폭력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 양성평등지수 및 성희롱 지수의 의무적인 평가와 이의 교수평가제 도입 검토 필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는 다른 다양한 방법의 모색들을 통해 보완되어질 수 있다. 그 대안적인 방법의 한 예로서 미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미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해당기구에 처음 부임될 때뿐만 아니라,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양성평등지수 및 성희롱 지수를 측정 받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만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한계점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평가들을 시행하고, 이를 교수평가에 반영한다면 교수사회 안에서도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대학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태도 및 역할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지 않을까 한다.

- 대책위원, 징계위원 대상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별도의 교육 필요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언하고 싶은 것은, 대학내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위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시행하는 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단지 성폭력 사건의 예방뿐만이 아니라 사건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책위원회위원이나 징계위원회위원들은 학칙의 실효성을 일선에서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이들 위원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원들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사건 해결 자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징계권을 가지는 위원들의 경우, 사건 지원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피해 유형별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4. 피해자 권리구제의 다양한 창구 중 하나로서의 학칙 적용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많은 대학에서 대학에 신고접수된 성폭력 사건이 민형사상 계류 중일 경우, 더 이상의 판단을 보류하고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학칙에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칙은 성차별적인 환경조성의 책임과 문제점 등 현행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으로 뛰어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대학에서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외국 대학의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대학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소송할 경우 학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는 학칙을 통해 피해 사실을 다루고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 소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사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중 삼중으로 자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의미로서 사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마치며...

앞서 지적된 내용들 이 외에도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경험들 그리고 외국 대학 학칙들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제언들을 덧붙이고 싶다.

많은 대학에서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및 성희롱 상담실의 운영을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학의 기본적인 시각과 정책적 입장 그리고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대학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외국 대학의 경우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관점과 이해를 학칙에 구체적으로 포함하거나, 혹은 별도의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의 반성폭력 아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 입장과 이해의 표명은,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명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 학칙과 달리 대학구성원들에게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를 명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불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구성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성폭력 예방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며, 학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해석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 대학의 경우, 징계위원회 강령을 도입하여, 징계위원들 각각의 자세나 유념할 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 학칙들이 징계위원의 구성과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할만한 좋은 사례라 생각되어진다.

덧붙여, 일부 대학에서 위원회 구성 중 학생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거나, 학생위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수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피신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을 배제할 수 있는, 위원 제척 기피 조항의 신설 문제 등도 덧붙여 제안하고 싶다.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한 성과로서 반성폭력 학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성은 단지 학칙의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다. 학칙을 제정하면서 대학과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이 본래적으로 의도했던 효과와 의미들은, 실제적인 사건지원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학칙의 끊임없는 보완과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학칙의 제정에서 더 나아가, 학칙을 통해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유도해내기 위해 학칙이 어떻게 더 보완되고,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본다.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짚어보기

>> 반성폭력학칙, 이대로 괜찮단 말인가?

연세대학교에서 반성폭력 학칙은 2000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학칙에는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존재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학칙 전체를 개괄하면서 세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자.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 학칙 전체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이처럼 간략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성폭력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새터반성폭력내규>에서는 '성폭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로 일반 개념을 규정하고, '1) 술자리, 2)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3) 생활 공간, 4) 놀이 자리, 5)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7) 적대적 환경 조성, 8) 사이버 공간'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 학칙이 연세대학교 소속원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어느 한 쪽이 연세대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리하기 힘들다. 연세대 소속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일방에만 해당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명시와 그에 대한 징계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또한 많은 경우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 신고인의 보호조항도 들어 가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담당기관

제 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구성)

- ① 상담소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상담소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 현재 성폭력 상담소는 여학생처에 부설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학생처장이 성폭력상담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여학생처 예산 중에서 상담소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

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소장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 ① 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상담소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는 없더라도 성폭력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는 대책위에서 사건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학칙에 징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칙에서 징계의 수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으로 정하고 징계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성폭력 사건 처리와 다양하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규정은 학칙이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세칙이 2001년에 제정되었고, 성폭력 상담실도 200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학중인(휴학·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 이 시행세칙은 휴학, 휴학을 포함하여 사건 발생 후에 졸업 또는 이직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학칙에 적용을 받는 자인지 규정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 중 어느 1인이더라도 관련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학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현재 여학생처장이 상담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실의 독립성 확보와 상담실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상담실장은 겸임하지 않도록 임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여학생처장은 성폭력을 다루는 전문 경험이 있지 않으며, 임기가 2년으로 상담실 고유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있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 상담원은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학칙에는 상담원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력이 상담원 임명 자격으로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상담원이 1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동안 상담실 업무와는 상관없이 단 한명의 상담원밖에 없었다. 상담원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와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성폭력상담실 전임 상담원을 최소 2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 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 ⑥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한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직위원에 포함된다.
-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당연직 대책위원에는 교무처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교수 대책위원 임명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대책위원들은 성폭력 개념과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칙에서는 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성폭력 처리와 관련된 일정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재 피해자 상담과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책위원들 뿐만 아니라 성폭력상담실 상담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실 상담원을 대책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 성폭력대책위원회에는 성폭력 처리에 관한 전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다. 성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 성폭력관련 단체의 사람도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대책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대책위원회에서 학생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책위원회에서의 학생이 동등한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 3항은 대책위원회 회의에 관해서 불필요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학생 위원의 지위는 한정된다.

제10조(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특별위원회의 참가 위원,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제1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성 목적이나 역할, 위상, 참가 위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的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의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징계를 발의하거나 요구할 수만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징계 및 조치에는 피해자 심리 상담이나 법률지원 등의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 성폭력 사건 공개 시파는 가해자의 사진 등의 부분이 빠져 있을 경우에만 조치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건 공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측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 ③ 공개사파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성폭력 사건 처리와 예방 교육에 관한 대책위의 활동을 공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대책위가 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학내 기구로서 공식적인 위상을 획득할 수 있다.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학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 '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애매한 규정은 현재 학칙이 분명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칙의 강제성을 분명히 하고 대책위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성폭력 학칙 자세히 살펴보기

적용범위, 피해자보호조항, 가해자 징계,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폭력상담실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세부항목 분석을 통해서 현행 연세대학교 학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학칙의 적용 범위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이하 '학칙')에서는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학재학(휴학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1) 학칙 적용을 받는 인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학칙의 적용 대상은 교원의 경우 교수와 시간강사, 학생인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직원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이 몇 가지의 예시들만으로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학내 구성원들을 포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가해자가 조교와 외부 초빙 교수인 경우, 교환학생, 재학생, 혹은 정규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일 경우, 그들이 학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논란의 와중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아예 소집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칙에 의한 사건 해결이 공중에 떠 버리게 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칙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괄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명시이 필요하다.

(2) 피/가해자 일방만이 학내 구성원인 경우에도 학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피/가해자 쌍방이 학내 구성원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칙에서는 사건의 조사를 위한 대책위의 구성, 가해자에 대한 학칙상의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피/가해자 일방만이 학내 구성원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도 갖추고 있지 않다. 학칙을 통해 일방만이 당사자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이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일방만이 관계된 사건이라도 학칙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할 수 있다).

먼저 가해자 일방만이 학내 구성원인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학내 구성원이 범죄의 가해자라면 학생 신분 유지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사건 공개를 통한 가해자 명시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일방만이 학내 구성원인 경우에는 학교 측이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칙이 아닌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수많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위험하고 지난한 과정이다. 학내에는 이미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학칙이 학내 구성원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보장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의료원-학교 구성원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학교는 행정적으로 분리된 대학과 의료원이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정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현 학칙대로라면 의료원의 직원은 학칙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간 구조상 의료원과 학교의 물리적 거리는 밀접하며, 상호 간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학내 구성원과 의료원의 구성원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상호 간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실제로 의료원-학내 구성원 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의 학생/교수이면서 동시에 의료원의 직원인 의과대 교수와 레지던트, 인턴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에 이들은 신분상 직원이라는 학칙 적용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처벌을 회피해 왔다.

피/가해자 일방만이 학내 구성원인 성폭력 사건들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규정의 일괄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학칙은 역할이 무력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중 의료원-학내 구성원 간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의료원과 학교 측의 행정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사건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의료원의 관련 규정과 학내 학칙이 통용될 수 있도록, 혹은 반성폭력 학칙에 한해서는 적용 범위에 의료원 구성원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거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학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 지역에는 몇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학생 거주지역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더구나 주거 공간에는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공간에 사는 학생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학교에서 충분히 기숙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취나 하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취하는 학생의 교육권의 보장은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칙이 피/가해자 일방만이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 해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주거 공간에서의 성폭력 사건 해결도 쉬워질 수 있다.

또한 주거 공간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대개는 인근 학교 학생 간에 발생하므로, 의료원의 경우처럼 인근 학교 간 반성폭력 학칙을 조율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구성원의 지위변동이 학칙적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의 지위변동이 학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현 학칙은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위변동이 있을 때, 학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놓지 않고 있다. 만약 시간강사인 가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사직하거나, 재학생이 졸업해 버리는 경우, 현 학칙대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더 이상의 진전을 보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6) 관련 타학교 우수학칙 사례

부산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교원은 전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촉탁직, 외인교수로 학생은 본교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재학생, 연구생, 교환학생으로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2)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3)피해자가 위 1)항의 적용에 해당될 때에는 가해자가 속한 기관 및 단체에 사건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시기는 사건 발생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피해자 보호 조항

반성폭력 학칙이 대학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해결의 의무가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칙에서도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칙이 갖고 있는 많은 의미들 중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여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성폭력'은 '있는'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 역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학칙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학칙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1)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첨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 경험을 상기해야 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설득해야만 할 것 같은, 혹은 실제로 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성폭력 해결 과정 자체가 2차 성폭력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그 속에서 피해자는 고통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의지 자체를 잃을 정도로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스스로 낙담하여 사건 해결을 포기하게끔 종용하고자 하는 것이 대책위원회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예견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책위의 책임 방기일 수 있다.

(2) 학칙에 명시된 성폭력 사건 공개 조항을 엄수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 과정에서 가해자 실명공개사과의 방식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원칙처럼 여겨져 온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문제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며,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폭력이 용인되고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온 문화 자체에 문제제기하기 위함인 것이다.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를 통해서만 잠

정적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처리된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내 반성폭력 학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학칙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가를 드러내는 것은 공개 그 자체로 매우 유효한 반성폭력 운동이 될 수 있다. 사건 공개를 피해자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를 더 중시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건의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공개의 방법과 기간이 학칙에 명시되어야 한다.

(3)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피해 때문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대리인의 보호에 대한 조항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4) 2차 가해자 혹은 2차 가해 집단에 대한 징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를 겪게 된다. 아직까지도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피해자가 조신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의 잘못을 무마시킬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역시 2차 가해임을 명시하고, 2차 가해 역시 성폭력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2차 가해 역시 성폭력 가해자와 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관련 타학교 우수학칙 사례

부산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中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성폭력 행위의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나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① 특정인의 관여를 거부할 권리, 단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③ 기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부당한 피해 역시 성폭력 행위에 의한 피해로 간주한다.

4) 성폭력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가 위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직접 회부,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 성폭력 가해자 징계

현재 학칙에 규정된 징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 가해자 강제 소환 규정이 필요하다.

가해자 불출석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케 할 강제적인 출석 요구 조항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청에 대한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위원회가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까지도 자주 발생한다. 가해자들이 강제 소환 규정이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출석하지 않고 징계를 쉽게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의 불출석을 제재하고 절차를 진행시킬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불협조로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학칙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2차 가해'에 대한 가중 징계 조항을 마련하고, 엄정히 시행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가중 징계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제 징계시 이 조항이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가중 징계 조항이 없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 3차 지속되는 반복적 가해 속에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건 해결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해자의 2차 가해 전 범위를 포괄할 수 없다. '보복'의 차원은 아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계속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호한 가중 징계를 보장하는 학칙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 덧붙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리거나 이행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동조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방조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하는 동조자를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자 및 제 3자 등에 대하여 확장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사건 해결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4) 가해자 공개 사과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가해자의 공개 사과는 가해자의 사전 동의라는 조건이 필요 없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현재 학칙에서는 제14조에서 '징계 및 조치'라고 명시만 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징계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치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가해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덧붙여 사과문의 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대체에 게재되는 방법이 아닐 경우 얼마간의 기간 동안 공개할 것인지를 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5) 사건의 처리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학칙상으로는 사건의 처리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실제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동시에 성폭력이 암묵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던 해당 집단의 문화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사건의 발생과 사건의 해결 과정을 학내에 알

리는 것은 위원회가 이행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사건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가해자가 시간강사일 경우의 실효성 있는 징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강사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수업을 그만 두고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순간 사건의 해결은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 또한 학기 중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 측에서 그 학기가 끝나면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시간강사에 대한 현재의 징계라면 징계일 것이다. 가해자는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다시 성폭력 가해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방할 방법이 없다. 시간강사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는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가해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등 이력으로 남겨놓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학교에서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시간강사 가해자에 대한 현재보다는 더욱 효과적인 징계일 것이다.

(7) 관련 타학교 우수학칙 사례

-동조자 처벌 규정과 외부인에 대한 징계 권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中

제 12조

③가해자가 제범이거나 위원회의 징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가중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④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 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방조 및 제3자 처벌이나 징계요구 등 확장조사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부산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中

제16조(결정 및 처리)

위원회는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의자에게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직접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中

제11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산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中

제17조(사건 공개의 원칙)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폭력대책위원회

반성폭력 학칙 개정 문제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련 학칙의 수정과 보완은 핵심적인 사항이다.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말을 쓰기가 머쓱할 정도로 현 학칙의 예방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지만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되었을 경우, 사건의 처리는 전적으로 대책위원회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은 학교 공동체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학칙 중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한 조항들은 전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실제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대책위의 운영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책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대책위원회의 자격은 당연직 혹은 대책위원장의 추천뿐이다. 성폭력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는 대책위원회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검토도 없는 실정인 것이다. 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시행할 것을 학칙으로 규정한다고 하여도, 몇 번의 교육만으로 성폭력 사건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구조적으로 피해자중심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학칙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대책위원의 자격과 대책위 구성에 관한 문제

(1) 대책위원들은 사건 해결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몇 번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대책위원들에게 피해자 중심주의의 감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격 요건이 전무한 것보다는,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 해결 당사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교육이나 받아야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대책위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책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 또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은 그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성폭력 사건 해결에 참여해온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져야 한다.

(2) 학생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학칙에서는 대책위원회가 당연직 교수 4인과 일반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7:3인 셈이다. (직원과 학생 위원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처리 사안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생 관련 사건에 한해서 직원 위원은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대책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 위원 비율이 학생 위원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종종 피해자 중심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개의 경우 학교 측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쉬쉬하며 빨리 사건을 덮으려 한다. 대책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원하는 실명공개사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학교 측의 무사안일한 태도 탓이 크다. 그리고 교수위원의 경우,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을 체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학교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수가 가해자일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교수위원들은 동료집단으로서 가해자 교수의 입장을 두둔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통이 배가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측의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학생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현 학칙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학생회장 혹은 각각의 추천인 3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수위원이 당연직 3인과 일반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학생 관련 사건의 경우만이라도 각 학생회장이 당연

직으로 대책위에 참여하고, 각 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몇 명이 교수 일반위원과 동수로 대책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대책위 구성에 있어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은 각각 직원과 학생 관련 사건에만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교수위원은 모든 사건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자'라는 교수의 지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수는 각 전공 학문의 전문가일 뿐이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교수 위원들의 자질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교수위원이 모든 사건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수위원이 징계담당자로서 학생 사건 해결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위원 역시 교수 관련 사건에만 참여하도록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대책위에 피해자의 입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담보시키는 방법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학칙에서는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해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교수위원 중에서도 여성위원의 수는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위원 수에 대해서도 여성위원의 수는 절반 이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학내 성폭력 상담실 상담원이 대책위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현 학칙에서는 학내 상담실의 상담원이 대책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상담실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을뿐 아니라 피/가해자 면담, 사건 조사 등 실질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작업은 상담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대책위에서 상담원은 아무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담원이 애써 피해자 입장에서 구성해 놓은 사건 이해가 대책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상담원이 대책위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져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상담원이 성폭력 사건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이므로 학내 위원들 중에는 그나마 피해자중심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위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외부전문위원의 대책위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학내의 대책위원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감수성을 담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온 외부 단체의 인사에 비해서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현 학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쓸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을 만들어 놓았지만, 선택 사항이다 보니 실제 외부전문위원을 대책위에 참여시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학내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어떤 자문 활동을 하는 지는 공개된 바 없으며, 대책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문위원들의 자격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대책위에 참가시키는 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외부전문위원이 대책위의 다른 위원들과 동등한 의결권은 갖지 못해도, 발언권을 가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거나, 대책위에 피해자중심주의를 담보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5) 교무처장이 당연직 대책위원으로 대책위에 참여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징계와 관련된다. 현재 대책위는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권은 갖고 있지 못하고 징계 담당 부서에 징계 권고만을 할 수 있다(대책위에서의 사건처리와 징계위의 징계를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 조항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학생 징계 담당자인 학생처장이 대책위에 포함되어 있어 징계위와 대책위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교수 징계의 담당자가 대책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나마의 징계 권고에 대한 의사소통마저도 원활하지 못하다. 실효성 있는 사건 해결을 위해, 대책위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과 병행하여, 교수 징계의 담당자인 교무처장이 당연직 대책위원으로 대책위에 참여해야 한다.

*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

현 반성폭력 학칙의 허술함은 대책위의 운영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대책위원들의 자격이 보증되어 위원들에 대한 강제 조항 없이도 대책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간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앞서 밝혔듯이 현 학칙은 대책위원의 자격과 대책위의 구성에서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 대책위원들의 대책위 운영에 대한 강제조항마저 없어 학칙에는 원칙상 피해자중심주의가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 사건 해결에 원칙을 녹여내기 위한 세부조항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위원 한명 한명에게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원칙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대책위 운영에 피해자중심주의를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1) 학생위원을 교수위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위원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앞서 학생위원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지만, 실제 대책위 논의 테이블에서 학생위원의 발언은 교수위원과 동등한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 사제지간의 권력관계는 학생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관철되어 사건을 논의하는 주체는 교수위원들이 되고, 학생위원의 의견은 참고발언 정도로 취급된다. 특히나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 학생위원에 대한 배제가 초래하게 될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대책위 구성에 있어 학생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모든 위원이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지님을 학칙으로 명시해야, 학생위원이 대책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그나마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책위원들에게 학칙에 명시된 의결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

학칙에서는 대책위의 모든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1인1표의 동등한 권리가 모든 위원들에게 보장되므로, 앞서 말한 대책위에서의 학생위원 배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대책위의 결정이 이 운영원칙을 따라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고, 대책위원장이 의견을 수렴한 후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까지의 대책위 논의 테이블은 학칙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의결의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되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원칙을 위반한 위원에 대한 징계나 강제 조항이 없어 이러한 파행적인 대책위 운영이 속수무책으로 계속되어 왔다. 대책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위원이 운영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위원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박탈하는 등 위원의 의무에 대한 강제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

(3) 대책위원회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대책위원을 징계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

이 글의 서두에서 예시하였듯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 조차 체득하고 있지 못한 대책위원들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할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에서 버젓이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격 기준이 없는 대책위원들이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도 허다하고, 특히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수위원들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두둔, 동조,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책위에 피해자중심주의원칙을 담보시키기 위해서는 대책위원들에 의해 2차 가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하며 위원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책위원의 2차 가해에 대해서 따로 징계할 수 있는 강제 조항도 필요하다.

▶ 성폭력상담실과 예방교육

1999년 7월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¹⁾. 이와 더불어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연 2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에 관한 교육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성희롱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 제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2000년 10월 연세대학교 내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2001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상담과 교육 및 고충처리를 담당할 기관으로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 설치된 것이다.

단대 혹은 동아리 등의 학내 커뮤니티 내에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미비한데다가 내규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성폭력 사건의 해결 및 성폭력 예방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학칙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학칙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연세대학교 내에서 상담실은 스스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가? 물론 상담실은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받고 신고받은 사건을 조사하여 대책위원에게 보고하며, 이와 동시에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상담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식 변화 캠페인³⁾ 등 다양한 업무를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현재 상담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 봄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상담소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서는 여학생처에 상담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처장이 상담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실이다. 이로 인해 상담실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해결시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여학생처의 하위 기구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간과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처의 업무가 과중한 때에는 '여학생처 소속' 상담실 역시 그 일을 함께 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 상담실에서 다른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처장이 상담실장을 겸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실장'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학생처장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상담하며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실무적인 부분을 맡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담실 '장'이 해결 과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상담원을 임명해야 하는 '상담실'의 '장'은 정작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담실 직원(이하 상담원) 한 명이 사건의 신고와 접수, 상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사건 조사와 보고 모두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과다한 업무 누적으로 이어져 상담원에게 심적 및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2) 상담원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는 상담실의 상담원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없다. 그저 [시행세칙] 제4조(상담원의 자격)에 '상담원은...(중략)...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는 모호한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학외의 관련 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몇 시간 이상 특정 과정을 이수했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관련 활동을 하였다든지, 대학원 등에서 여성학을 공부하였다든지 하는 등의, 좀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처장이 있고,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상담실장과 상담원이 있어 각각 스스로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 7조 2항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4조

3) 참조 : 성폭력상담실 웹사이트

(3) 예방과 홍보 및 교육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서는 시행세칙에 그저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란 힘들다. 교직원들의 경우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담보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은 더욱 문제이다. 반성폭력 새터 내규(이하 '내규')의 경우, 학내 여성운동단위를 비롯한 여러 학생자치단위들에 의해 매년 홍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양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홍보와 교양이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급증시키지는 못하며, 내규로서의 한계가 여전한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최소한 내규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칙에 대한 상담실의 홍보 및 교육은 너무나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학칙의 존재 자체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인 학내에서 과연 '어떤'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들이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교수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다. 학생과 교수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수에게 무언가 제재를 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학칙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했을 때 현실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징계 등-를 얻어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내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학기초에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송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겠는가? 그나마 새로 임용되는 교수들에게는 간단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을 받는 교수들의 수가 전체 교수들에 비해 매우 '소수일 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은가. '교수들의 개인 일정이 매우 바쁘다'거나 '그 많은 수의 교수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힘들다'는 설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상담실의 책임 방기에 대한 변명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수가 아닌 강사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 강사 자신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다면 학교는 강사에게 아무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결국 학칙으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때마침 많은 수의 강사들이 수업 중 성폭력적인 발언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일삼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강사 채용시에도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해결 및 처리 과정이 강화 및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는 자세히 서술되어야 할 내용들이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우선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혹은 피해자 대리 신고인)이 어떻게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해줄 '교내전문가 또는 기관'도 보다 자세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내 전문가라는 부분은 매우 모호한데, 교내에서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할 수 있을만한 기관은 상담실밖에 없을텐데 사건을 신고 받고 해결해야 하는 상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맡는 것은 피해자에게나 상담실에게나 모두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학외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심리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동성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도 허점이 있다. 동성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남성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성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담실 구조 하에서 남성 피해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성 상담원'에게 사건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권리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학칙 자체가 '피해자=여성, 가해자=남성'이라는 고정된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보고받는 사람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위원장이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원장과 친분 관계 혹은 친족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 혹은 위원장 자신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때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상담실장이 위원장 대신 사건을 맡아 대책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장 기피 조항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학칙으로 교수 성폭력 해결하기

0. '교수 성폭력'을 만나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수십 개의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들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은 대학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수 성폭력은 교수-학생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문제되지 않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사회에는 교수 성폭력을 둘러싼 침묵의 고리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다수의 교수들과 학교 행정가들 역시 대학사회에는 교수 성폭력은 몇몇 '문제 있는' 교수들의 개인적인 잘못 혹은 실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어렵게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을 만든다. 교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학교와 교수 집단이 오히려 성폭력 사건 방조와 은폐,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부정 및 2차 가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교수 성폭력의 현재 상황이다.

1. 교수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사회의 구조와 그 모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한다. 전통적인 유교적 교육관이 지배적인 한국 대학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강의나 연구 담당자 이상의 지위를 획득한다. 스승으로 불리면서 도덕적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 진학, 논문, 취업 등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조화된다. 특히 남성중심성과 서열주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학 사회 내에서 남성 교수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성폭력 가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학 내에서 교수 지위는 수년 동안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마저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교수 성폭력은 철저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와 계속되는 2차 가해에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

▼ 사건 발생

현재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수가 학생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수를 '믿는' 수밖에 없다. 성폭력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라도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학의 상황이다. 교수는 학생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학 당국은 교수의 이러한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으면서도 이 지위가 교육이나 연구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지난 5월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발언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수십 건의 언어적 성폭력 사례를 접수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교수나 강사에 의해서 수업 중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중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 교수나 학교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2000년에 발생한 사회복지학과 김기환 교수 성폭력 사건은 교수 지위가 성폭력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교수가 논문 지도 명목으로 학생을 불러내어 성폭력 가해를 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단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대 이진만 교수, 동국대 김익기 교수, 서강대 김명준 교수, 시립대 정상균 교수, 서강대 홍교수, 서울대병원 ○교수(실명 확인이 안돼서 초성 처리함) 성폭력 사건과 다른 교수 성폭력 사건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된다.

▼ 사건 신고

교수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보다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가해 교수들은 학업과 관련해서 수업이나 논문, 전공 결정 등에 있어서 피해 학생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교수-학생 관계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성폭력 사건 신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성폭력 가해 교수를 신고해서 사건 처리가 되더라도 학생들은 다시 가해 교수에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지난 1학기에 총여학생회로 몇 건의 교수 성폭력 관련 상담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 교수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와 신고인이 대학원 입학이나 진학에 있어서 그 학과나 교수의 영향력 - 가해 교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 교수들까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 - 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결국 사건 신고로 인해 받게 될지도 모를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성폭력 사건 자체가 공론화될 경우 피해자나 신고인의 신원이 가해 교수에게 알려지게 되어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피해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사건 처리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징계권자인 학교 당국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학교로 신고되더라도 학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학교의 명예와 가해 교수를 먼저 생각한다. 징계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 교수들이고 사건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인 학생측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 학교 당국과 교수들은 교수 성폭력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대학에서 교수 지위가 이용되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사소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교수 성폭력을 대학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수 개인의 잘못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학교와 가해자를 포함한 교수사회 전체와 싸워나가야 한다. 학교와 교수 사회 모두가 가해자를 감싸주는 풍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수의 처벌은 더욱더 어려워 수밖에 없다.

▼ 명예훼손 역고소

교수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교수들이 성폭력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구실로 사건을 은폐하고 처리 과정을 지연시키며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나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 훼손 역고소도 빈번히 발생한다. 가해 교수의 실명이나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개에서부터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알려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가해 교수는 성폭력 가해와는 별개로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된 몇몇 단어나 진술을 문제삼는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나 지원 단체 및 개인을 명예훼손 고소함으로써 사건 처리 자체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징계

반성폭력 학칙,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이다. 학칙에 규정된 위원회의 업무는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중재,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와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원회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칙 자체의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훌륭하게 제정된 학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책위원회에서는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여학생처장과 학생처장, 대학원 교학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리고 일반위원으로 총학생회장 혹은 추천 1인, 총여학생회장 혹은 추천 1인, 대학원학생회장 혹은 추천 1인,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원 3인, 그리고 교수 3인이 관련 사안에 참여한다. 많은 사건이 학생-학생 혹은 교수-학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직위원과 일반직 위원 중 학생대표들과 교수 3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된다. 학칙과 시행세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원들이 학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달라진다.

위원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에 의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책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인지 수준과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다고 하여 성폭력 해결 과정에 있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어려우며 이는 일반 교수 위원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에 많은 교양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내 성폭력 상담실의 상담원이 피해자의 면담을 비롯하여 사건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들을 모두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원의 발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기껏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해온 사건이 위원회의 테이블로 넘어오면서 다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방학이면 교환학생은 여자애들이 벗고 다녀서 걱정이다(웃음)'

'동성간 성폭력이라니 이젠 병이나 정신이상 아니냐'

'남자에 집에 쫓아간 여자애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와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원들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연세대학교 학칙에 의한 대책위원회의 자체 징계 권한에는 가해자의 공개 사과와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와 같은 것이 있다. 학칙에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는 자체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꺼려한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체 징계를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위원장 스스로 위원회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징계 결과에 대한 가해자(특히 교수일 경우)의 대응이나 반발에 책임지고 싶지 않음과 더불어 '성폭력' 사건을 경미하거나 사소한 일로 여긴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교외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학내 상담실에서 모든 사건을 상담원 1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상담원이 대책위원회 내에서 발언권이 없다는 점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더더욱 필요로 한다. 학칙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교내의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²⁾, 하지만 이제까지 위원회 내에서는 교외 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요청한 적이 없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학내 문제는 어찌되었든 학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뿌리 깊은 생각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학교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연장으로 위원회는 '사건 공개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위원회 내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내용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³⁾과 처리된 사건을 공개하는 것⁴⁾은 전혀 다른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해결된 사건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성폭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 받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무엇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학내 구성원에서 공지함으로써 전반적인 학내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또한 사건이 공개되었을 경우-가해자의 실명 공개는 별도로 하고라도-가해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것은 위원회의 성폭력에 대한 입장 없음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사회 통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며, '학교 이미지 관리' 보다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칙이 많이 부족한 학칙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부족한 학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한 '성폭력 없는 캠퍼스'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학교로 남게 될 것이다.

2)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의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4) 제14조(징계 및 조치)

-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

반성폭력 학칙과 관련해서 학칙의 규정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학생처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여학생처에서는 학칙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6일 여학생처장으로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위원이며 성폭력상담실장인 박영순 교수님과 학칙 개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의 적용

가해자 일방이 연세 대학교 구성원일 때, 피해자가 소속된 단위에서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해 온다면 가해자를 학칙으로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해자 일방이 학교 구성원인 경우 - 예를 들어 연세대 학생과 그 학생이 다니는 학원 강사 사이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상담실을 통해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는 것 외에, 그 사건에 대해 대책위를 소집한다든가, 가해자 징계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 불분명하다. 피/가해자 일방만이 학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학교에서 사건 해결을 지원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외의 가해자에게 취해야할 조치를 학교 측에서 의논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구해봐야 할 것 같다.

피/가해자 일방만이 학교 구성원인 성폭력 사건 중 의료원 직원과 학내 구성원 간 사건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연세대학교의 반성폭력 학칙이 의료원에도 적용되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대책위원회 자격 및 대책위 운영 과정

실질적인 학사 행정의 담당자인 교무처장이 대책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 대책 위원 자격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대책 위원들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그러나 학생위원의 지위보장을 위해 학생 사안뿐만이 아닌, 모든 사건에 학생위원들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은 무리가 있다. 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에는 사제관계가 있다. 교수만이 해당하는 사건 처리 과정을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민망한 일이다.

외부전문위원을 대책위에 참여시키는 데에도 찬성할 수 없다. 연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우리 집안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자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대책위 운영에 관해서, 대책위 논의 테이블에서 공식적인 의결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는 당연히 찬성이다. 그리고 대책위 활동 공개 부분도, 이제까지 대책위가 활동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대책위가 해결하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알릴 필요를 느끼기 못해 공개 하지 않았던 것이지, 감춰온 것은 아니다. 대책위의 활동은 어차피 공식적인 문서로 정리되니 필요하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 학칙에도 예방교육을 시행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자리에 모으기 힘든 교수의 경우, 매 해 절반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는 2월의 교수 수양회 자리에서 예방교육을 진행 하려는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강사의 경우

교육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의 학과장에게 전달해 학과장을 통해 강사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정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가해자 징계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인데, '가해자 불출석 시 제재 규정 및 강제적인 출석 요구 조항'이라는 표현은 가해 학생을 너무 범죄자 다루듯 하는 표현법이다. '가해자가 조사과정 및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항이면 적절할 것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이외에도, 언어적 환경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중 징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폭력 상담실

상담원이 대책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동감한다. 현재 상담실장은 여학생 처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 상담원을 성폭력 상담실장으로 격상 시키고 상담실장이 대책위에 참여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상담실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처로부터 상담실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다르다. 오히려 여학생처 산하에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상 정도라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실처장들의 회의 자리에서 이야기 되지 않는 사안들은 학교 행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의 현실인데, 여학생처를 통해서라도 이야기 되지 않으면, 상담실의 활동과 고민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학생처 자체가 학교 행정에서 그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실을 독립된 특별 기구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더라도, 상담실의 위상이 지금보다 상향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 다만 여학생처 내에서 상담실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법 등으로 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는 있겠다.

-교수성폭력

전체 교수 중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교수는 1/1000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 교수를 잠재적 가해자로 고려하고 교수에 관하여 이런 특수한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교수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다만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더욱 힘든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작업은 해 볼 수 있다. 여학생처에서도 이제까지 있어왔던 교수 성폭력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다.

>>> 연세대학교는 반성폭력 학칙의 개정과 개선을 위해 제 몫을 다하라!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0년 10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했다. 이는 당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있었던 반성폭력 학칙 제정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색내기 식의 ‘제정’에만 급급해 그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칙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시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단위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정된 학칙에도 여전히 부족한 지점, 운영상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부족함을 채울 일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학교에 있으나, 현재 학교는 학칙의 개선과 개정이라는 자기의 몫을 망각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대책위원회’에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학생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음을, 성폭력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과 사건 예방의 힘을 갖는 ‘사건공개’의 원칙에 대한 무시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음을 말해 준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함과 무책임함, 교외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한 무성의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예방하겠다는 의지의 결여와 학교이미지 실추만을 신경 쓰는 알락한 태도의 문제이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없이 대책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일삼는 현실은, 학칙의 올바른 적용을 바라는 것은 차라리 사치라는 것을 절감하게 한다.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강제력을 갖는 학칙은 제정보다 제대로 된 운영이 중요함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보여지는 연세대학교의 이러한 임무 방기는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대학의 현실을 외면하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예방보다는 학교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여 ‘대학’이라는 최소한의 자기정체성마저 상실한 모습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분명 학내에 존재하는 성폭력의 의미와 그 해결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공청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학 내에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에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제대로 된 반성폭력 학칙의 운영을 바라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학칙의 개정과 개선에 적극 반영하라!

2003년 9월 18일

반성폭력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가자 일동